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43

발의연월일 : 2023. 3. 17.

발 의 자 : 윤후덕・박 정・양경숙

김정호 • 우원식 • 김철민

박상혁 • 이위욱 • 홍기위

김주영 · 서삼석 · 이형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 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없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 입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 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및 안 제36조).
- 나.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함(안 제30조제8항 신설).
- 다.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 전문조사관) ①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중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조사관(이하 "전문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게 하여야 한다.
 - 1. 19세 미만인 피해자
 - 2.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③ 전문조사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조사관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법정대리인"을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전문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1. 조사 과정이 촬영 · 보존된다는 사실
- 2. 촬영·보존된 영상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영상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진술조력인"을 "진술조력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 중 "진술조력인"을 "진술조력인 또는 전문조사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
	죄의 피해자 등 전문조사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
	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중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
	적인 교육·훈련(이하 이 조에
	<u>서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u>
	을 받은 사람을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조사
	관(이하 "전문조사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19
	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전
	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
	하게 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인 피해자
	2.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 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 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⑤ (생 략)
-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피해자

- ③ 전문조사관이 19세미만피해 자등을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 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 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 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조사관 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 ·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법정대리인(법정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 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단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7) (생략) (신설)

<u><신 설></u>

- (7) (현행과 같음)
- ⑧ 전문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 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 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 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1. 조사 과정이 촬영·보존된다 는 사실
- 2. 촬영·보존된 영상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공 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 인은 제1항에 따른 영상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형사소송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 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 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 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 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 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 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 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법」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 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진술조력인 등의 수사과 정 참여) ① ----------진술조력인 또는 전문조 ② ~ ⑥ (현행과 같음)